



유럽국가들의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제(II)

류 금 렬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세제1담당

9.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자동차 보유세는 견인세(haulage tax), 도로세(road tax), 지방자동차세(municipal car tax)의 3종이 있다.

1) 견인세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운수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총허용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연간세율(정액)은 다음 표와 같다.

12톤 이하 화물차 세율

총허용 중량(kg)	세율(에스쿠도스)
2,500kg 이하	3,300
3,500kg 이하	5,500
7,500kg 이하	12,500
12,000kg 이하	21,000

12톤 초과 화물차 세율

차축	총허용 중량	연세액(에스쿠도스)	
		현가식	비현가식
2차축	12,001 ~ 14,999	25,000	53,000
	15,000 ~ 17,999	30,000	55,000
	18,000 ~ 19,000	35,000	69,000
3차축	15,000 ~ 17,999	25,000	32,000
	18,000 ~ 22,999	30,000	42,000
	23,000 ~ 26,000	30,000	45,000
	23,000 ~ 26,000	45,000	46,000
4차축	23,000 ~ 24,999	35,000	42,000
	25,000 ~ 25,999	40,000	46,000
	26,000 ~ 28,999	65,000	80,000
	29,000 ~ 32,000	73,000	88,000

연결 자동차(articulat vehicles and conjoints) 세율

차축 형태	총허용 중량	연세액(에스쿠도스)	
		현가식	비현가식
2+1	12,001 ~ 17,999	25,000	32,000
	18,000 ~ 24,999	32,000	42,000
	25,000 ~ 25,999	40,000	48,000
	26,000 ~ 29,000	60,000	80,000
2+2	23,000 ~ 24,999	30,000	40,000
	25,000 ~ 25,999	35,000	42,000
	26,000 ~ 28,999	50,000	70,000
	29,000 ~ 30,999	60,000	80,000
	31,000 ~ 32,999	70,000	88,000
	33,000 ~ 38,000	85,000	88,000
2+3	36,000 ~ 37,999	75,000	88,000
	38,000 ~ 40,000	85,000	88,000

차축 형태	총허용 중량	연세액(에스쿠도스)	
		현가식	비현가식
3+2	36,000~37,999	70,000	87,000
	38,000~39,999	80,000	88,000
	40,000~44,000	85,000	88,000
3+3	36,000~37,999	63,000	80,000
	38,000~39,999	75,000	80,000
	40,000~44,000	75,000	88,000

2) 도로세

총허용 중량이 2,500kg을 초과하는 자가용 화물차는 도로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화물차의 범위에는 농업용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포함된다. 도로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총허용 중량 12톤 이하 화물차 세율

총허용 중량(kg)	연세액(에스쿠도스)
2,500kg 이하	4,900
3,500kg 이하	8,200
7,500kg 이하	19,500
12,000kg 이하	32,000

총허용 중량 12톤 초과 화물차 세율

차축	총허용 중량(kg)	연세액(에스쿠도스)	
		현가식	비현가식
2	12,000~14,999	45,000	53,000
	15,000~17,999	50,000	55,000
	18,000~19,000	63,000	69,000
3	15,000~17,999	45,000	50,000
	18,000~22,999	57,000	63,000
	23,000~26,000	63,000	69,000

차축	총허용 중량(kg)	연세액(에스쿠도스)	
		현가식	비현가식
4	23,000~25,999	57,000	63,000
	26,000~32,000	108,000	120,000

연결 자동차(articulat vehicles and conjoins) 세율

차축 형태	총허용 중량(kg)	연세액(에스쿠도스)	
		현가식	비현가식
2+1'	12,000~14,999	45,000	54,000
	15,000~24,999	59,000	68,000
	25,000~25,999	63,000	69,000
	26,000~29,000	117,000	126,000
2+2	23,000~25,999	57,000	63,000
	25,000~30,999	108,000	120,000
	31,000~32,999	113,000	122,000
	33,000~38,000	120,000	132,000
2+3	36,000~37,999	117,000	126,000
	38,000~40,000	120,000	132,000
3+2	36,000~37,999	110	122,000
	38,000~39,999	110,000	130,000
	40,000~44,000	126,000	132,000
3+3	36,000~39,999	100,000	120,000
	40,000~44,000	120,000	132,000

3) 지방자동차세

지방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승용차,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자동차, 3인승 이상의 밴, 오토바이 등이다. 지방자동차세는 차령을 감안하여 과세한다. 서울은 다음 표와 같다.

오토바이를 제외한 자동차의 세율

그룹별	연료별 배기량(cc)			연세액(에스쿠도스)		
	휘발유	기타 연료	전기	차령 5년 이하	11년 이하	15년 이하
A	1,000 이하	1,500 이하	100 초과	2,700	1,500	900
B	1,300 이하	2,000 이하	100 이하	5,400	2,700	1,400
C	1,750 이하	3,000 이하		8,400	4,200	2,900
D	2,600 이하	3,000 초과		21,200	10,200	4,000
E	3,500 이하			33,700	16,200	7,700
F	3,500 초과			59,700	27,600	11,500

오토바이의 세율

그룹별	배기량(cc)	연세액(에스쿠도스)		
		4년 이하	9년 이하	15년 이하
G	180~250	700		
H	350 이하	1,000	600	
I	500 이하	2,600	1,400	800
J	750 이하	8,200	4,100	1,800
K	750 초과	16,600	8,000	3,900

10. 오스트리아

1) 과세기준

오스트리아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다. 과세기준은 오토바이는 배기량이며, 그밖의 자동차는 출력(kw)이다. 제3자 보험(third-party insurance)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와 혼합차(combination vehicle)에 대해서

는 보험세(motorbezogene versicherungssteuer)가 과세된다.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kraftfahrzeugsteuer)가 과세된다.

2) 보험세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세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보험세액} = (\text{kw} - 24) \times f$$

f는 기간별 세액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월세액 : $f = 5.5 \text{ ATS}$ (ATS는 오스트리아의 화폐 단위임)

분기세액 : $f = 5.4 \text{ ATS}$

반년세액 : $f = 5.3 \text{ ATS}$

연세액 : $f = 5.0 \text{ ATS}$

보험세의 최저세액은 53 ATS이며, 상한세액은 600 ATS이다. 보험세는 보험료와 동시에 징수되며, 1987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되고 오염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3)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자동차세의 세율

차종별	월세액(ATS)	최저세액(ATS)	상한세액(ATS)
오토바이	0.22/cm ³		
총중량 12톤 이하	70/톤	600	
총중량 18톤 이하	75/톤		
총중량 18톤 초과	85/톤		3,230
트레일 12톤 이하	70/톤		2,250
18톤 이하	75/톤		
18톤 초과	85/톤		

4) 도로세(Strassenbenützungsabgabe)

도로를 이용하는 12톤 이상의 화물 수송용 트레일러는 도로세의 과세 대상이다. 도로세는 연세액을 4회 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가 증액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에서 등록한 트레일러는 도로세를 선납해야 한다. 도로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도로세의 세율(단위: ATS)

차종별	배출기준	일세액	주세액	월세액	연세액
3차축 이하	無 EURO	110	440	1,320	13,200
	EURO 1	110	400	1,168	11,680
	EURO 2	110	358	1,032	11,680
3차축 초과	無 EURO	110	688	2,132	21,320
	EURO 1	110	620	1,926	19,260
	EURO 2	110	564	1,720	17,200

11. 네덜란드

1) 과세기준

자동차의 보유에 대해서는 도로세(motor-fijtuigen belasting)를 과세한다. 자가용 자동차는 중량(dead-weight)과 연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지역별로 세율은 다르다. 버스 등 승합차와 영업용 자동차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2) 세율

○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의 세율은 지역별로 다르나, 여기서는 Utrecht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Utrecht도의 자가용 자동차 세율(단위 : NLG)

중량(kg)	휘발유	경유	중량	휘발유	경유
550	176	560	2,551-2,650 2,651-2,750 2,751-2,850 2,851-2,950 2,951-3,050	3,256 3,416 3,576 3,736 3,900	5,152 5,384 5,612 5,844 6,076
551-650	236	688			
651-750	296	820			
751-850	396	988			
851-950	524	1,212			
951-1,050	684	1,444			
1,051-1,150	848	1,676	3,051-3,150	4,060	6,308
1,151-1,250	1,008	1,908	3,150-3,250	4,220	6,540
1,251-1,350	1,168	2,140	3,251-3,350	4,352	6,744
1,351-1,450	1,328	2,372	3,351-3,450	4,480	6,944
1,451-1,550	1,488	2,604	3,451-3,550	4,612	7,148
1,551-1,650	1,648	2,836	3,551-3,650	4,744	7,348
1,651-1,750	1,812	3,068	3,651-3,750	4,872	7,548
1,751-1,850	1,972	3,296	3,751-3,850	5,004	7,752
1,851-1,950	2,432	3,528	3,851-3,951	5,036	7,952
1,951-2,050	2,292	3,760	3,951-4,050	5,264	8,156
2,051-2,150	2,452	3,992	4,051-4,150	5,396	8,356
2,151-2,250	2,612	4,224	4,151-4,250	5,528	8,556
2,251-2,350	2,772	4,456	4,251-4,350	5,656	8,760
2,351-2,450	2,936	4,688	4,351-4,450	5,788	8,960
2,451-2,550	3,096	4,920	4,451-4,550	5,920	9,164

○ 뱅

뱅에 대한 세율은 지역 또는 연료에 따른 차등이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정액)이 적용된다.

뱅의 세율(단위 : NLG)

중량(kg)	세액	중량(kg)	세액
550 이하	56	2,051-2,150 2,151-2,250 2,251-2,350 2,351-2,450 2,451-2,550	740 784 832 876 920
551-650	112		
651-750	152		
751-850	192		
851-950	232		
951-1,050	272		
1,051-1,150	312	2,551-2,650	968
1,151-1,250	356	2,651-2,750	1,012
1,251-1,350	396	2,751-2,850	1,040
1,351-1,450	440	2,851-2,950	1,052
1,451-1,550	480	2,951-3,050	1,064
1,551-1,650	524	3,051-3,150	1,072
1,651-1,750	568	3,151-3,250	1,084
1,751-1,850	608	3,251-3,450	1,096
1,851-1,950	652	3,351-3,450	1,104
1,951-2,050	692	3,451-3,550	1,116

○ 트럭

트럭에 대한 세율은 지역별 또는 연료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트럭의 세율(단위 : NLG)

중량(kg)	세액	중량(kg)	세액
3,501-11,999	700	26,000-26,999	1,424
12,000-12,999	748	27,000-27,999	1,472
13,000-13,999	796	28,000-28,999	1,520
14,000-14,999	844	29,000-29,999	1,568
15,000-15,999	892	30,000-30,999	1,620
16,000-16,999	940	31,000-31,999	1,668
17,000-17,999	988	32,000-32,999	1,716
18,000-18,999	1,036	33,000-33,999	1,764
19,000-19,999	1,084	34,000-34,999	1,812
20,000-20,999	1,136	35,000-35,999	1,860
21,000-21,999	1,184	36,000-36,999	1,908
22,000-22,999	1,232	37,000-37,999	1,956
23,000-23,999	1,280	38,000-38,999	2,004
24,000-24,999	1,328	39,000-39,999	2,052
25,000-25,999	1,376	40,000-40,999	2,104
		41,000 초과	3개월당 531

○ 버스 등 승합차

버스 등의 승합차의 경우도 지역·연료에 따른 차등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승합차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승합차의 세율(단위 : NLG)

중량(kg)	세액	중량(kg)	세액
1,050 이하	196	5,551-5,650	936
1,051-1,150	224	5,651-5,750	944
1,151-1,250	252	5,751-5,850	952
1,251-1,350	280	5,851-5,950	964
1,351-1,450	308	5,951-6,050	972
1,451-1,550	336		
1,551-1,650	364	6,051-6,150	980
1,651-1,750	392	6,151-6,250	992
1,751-1,850	420	6,251-6,350	1,000
1,851-1,950	448	6,351-6,450	1,008
1,951-2,050	480	6,451-6,550	1,016
2,051-2,150	508	6,551-6,650	1,028
2,151-2,250	536	6,651-6,750	1,036
2,251-2,350	564	6,751-6,850	1,044
2,351-2,450	592	6,851-6,950	1,052
2,451-2,550	620	6,951-7,050	1,064
2,551-2,650	648	7,051-7,150	1,072
2,651-2,750	672	7,151-7,250	1,080
2,751-2,850	680	7,251-7,350	1,092
2,851-2,950	688	7,351-7,450	1,100
2,951-3,050	700	7,451-7,550	1,108
3,051-3,150	708	7,551-7,650	1,116
3,151-3,250	716	7,651-7,750	1,128
3,251-3,350	724	7,751-7,850	1,136
3,351-3,450	736	7,851-7,950	1,144
3,451-3,550	744	7,951-8,050	1,156
3,551-3,650	752	8,051-8,150	1,164
3,651-3,850	764	8,151-8,250	1,172
3,751-3,850	772	8,251-8,350	1,180
3,851-3,950	780	8,351-8,450	1,192
3,951-4,050	788	8,451-8,550	1,200
4,051-4,150	800	8,551-8,650	1,208
4,151-4,250	808	8,651-8,750	1,220
4,251-4,350	816	8,751-8,850	1,228
4,351-4,450	824	8,851-8,950	1,236
4,451-4,550	836	8,951-9,050	1,244

중량(kg)	세액	중량(kg)	세액
4,551-4,650	844	9,051-9,150	1,256
4,651-4,750	852	9,151-9,250	1,264
4,751-4,850	864	9,251-9,350	1,272
4,851-4,950	872	9,351-9,450	1,280
4,951-5,050	880	9,451-9,550	1,292
5,051-5,150	888	9,551-9,650	1,300
5,151-5,250	900	9,651-9,750	1,308
5,251-5,350	908	9,751-9,850	1,320
5,351-5,450	916	9,851-9,950	1,328
5,451-5,550	928	9,951-10,050	1,336
1,0051-10,150	1,344	12,551-12,650	1,572
1,0151-10,250	1,356	12,651-12,750	1,584
1,0251-10,350	1,364	12,751-12,850	1,592
1,0351-10,450	1,372	12,851-12,950	1,600
1,0451-10,550	1,384	12,951-13,050	1,612
1,0551-10,650	1,392	13,051-13,150	1,628
1,0651-10,750	1,400	13,151-13,250	1,636
1,0751-10,850	1,408	13,251-13,350	1,648
1,0851-10,950	1,420	13,351-13,450	1,656
1,0951-11,050	1,428	13,451-13,550	1,664
1,1051-11,150	1,436	13,551-13,650	1,676
1,1151-11,250	1,448	13,651-13,750	1,684
1,1251-11,350	1,456	13,751-13,850	1,692
1,1351-11,450	1,464	13,851-13,950	1,700
1,1451-11,550	1,472	13,951-14,050	1,712
1,1551-11,650	1,484	14,051-14,150	1,720
1,1651-11,750	1,492	14,151-14,250	1,728
1,1751-11,850	1,500	14,251-14,350	1,736
1,1851-11,950	1,508	14,351-14,450	1,748
1,1951-12,050	1,520	14,451-14,550	1,756
1,2051-12,150	1,528	14,551-14,650	1,764
1,2151-12,250	1,536	14,651-14,750	1,776
1,2251-12,350	1,548	14,751-14,850	1,784
1,2351-12,450	1,556	14,851-14,950	1,792
1,2451-12,550	1,564	14,951-15,050	1,792
		15,051 이상	100kg마다 2.28 추가

○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의 경우도 지역 또는 연료에 따라 차등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세율(단위 : NLG)

중량(kg)	세액	중량(kg)	세액
550 이하	44	5551-5650	556
551-650	56	5651-5750	564
651-750	64	5751-5850	576
751-850	76	5851-5950	584
851-950	84	5951-6050	596
951-1050	96		
1051-1150	104	6051-6150	604
1151-1250	116	6151-6250	616
1251-1350	124	6251-6350	624
1351-1450	136	6351-6450	636
1451-1550	144	6451-6550	644
1551-1650	156	6551-6650	656
1651-1750	164	6651-6750	664
1751-1850	176	6751-6850	676
1851-1950	184	6851-6950	684
1951-2050	196	6951-7050	696
2051-2150	204	7051-7150	704
2151-2250	216	7151-7250	716
2251-2350	224	7251-7350	724
2351-2450	236	7351-7450	736
2451-2550	244	7451-7550	744
2551-2650	256	7551-7650	756
2651-2750	264	7651-7750	764
2751-2850	276	7751-7850	776
2851-2950	284	7851-7950	784
2951-3050	296	7951-8050	796
3051-3150	304	8051-8150	804
3151-3250	316	8151-8250	816
3251-3350	324	8251-8350	824
3351-3450	336	8351-8450	836
3451-3550	344	8451-8550	844

중량(kg)	세액	중량(kg)	세액
3551-3650	356	8551-8650	856
3651-3750	364	8651-8750	864
3751-3850	375	8751-8850	876
3851-3950	384	8851-8950	884
3951-4050	396	8951-9050	896
4051-4150	404	9051-9150	904
4151-4250	416	9151-9250	916
4251-4350	424	9251-9350	924
4351-4450	436	9351-9450	936
4451-4550	444	9451-9550	944
4551-4650	456	9551-9650	956
4651-4750	464	9651-9750	964
4751-4850	476	9751-9850	976
4851-4950	484	9851-9950	984
4951-5050	496	9951-10050	996
5051-5150	504	10051 이상	100kg당 2.50 추가
5151-5250	516		
5251-5350	524		
5351-5450	536		
5451-5550	544		

12. 핀란드

핀란드의 자동차 보유세는 자동차세와 휘발유·연료사용자동차세가 있다.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총허용중량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 밴 및 특수 용도 자동차가 과세대상이다. 1993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연간 500 FIM을, 1994년 이후 등록한 자동차는 700 FIM을 과세한다.

2) 휘발유외 연료사용자동차세

휘발유외에 경유, 등유, LPG, 전기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된다. 차종별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 승용차 : 총중량 100kg당 150 FIM
- 밴 : 총중량 100kg당 27 FIM
- 2차축 트럭 : 총중량 14,000kg 이하는 100kg당 27 FIM +
14,000kg 초과 100kg당 54 FIM
- 세미 트레일러용 2차축 트럭 : 총중량 100kg당 51 FIM
- 트레일러용 트럭 : 총중량 100kg당 54 FIM
- 3차축 이상 트럭 : 총중량 19,000kg 이하는 100kg당 36 FIM +
19,000kg 초과는 100kg당 63 FIM
- 세미 트레일러용 보기(bogie)트럭 : 총중량 100kg당 48 FIM
- 트레일러용 보기 트럭 : 총중량 100kg당 54 FIM

13. 스웨덴

1) 과세기준

스웨덴의 자동차 보유세는 도로세이다. 중량, 차축수, 사용 연료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3.5톤 이하 2001년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환경등급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5년간 도로세가 면제된다. 2000년 1월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는 3,500 SEK의 경감이 이루어진다.

2) 세율

도로세의 차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승용차

승용차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중과세

율이 적용된다. 1994년식부터는 아래 표의 세율의 3.8배, 1993년식 이전은 2배 증가된다.

승용차 세율

중량(kg)	연세액(SEK)
900 이하	585
901-1,000	734
1,000 초과	1000kg 초과 100kg당 149SEK 추가

○ 오토바이 세율

종류별	중량(kg)	세액(SEK)
사이드 카 없는 2륜	75 이하	100
	76 이상	137
기타	-	220

○ 버스

버스는 사용 연료와 중량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며,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버스 세율

종류별	중량(kg)	기본세액	당해단계 최저세율 100kg 초과시 가산액
휘발유, LPG 버스	1,600 이하	390	-
	1,601-3,000	430	40
	3,000 초과	984	-
기타	1,600 이하	720	-
	1,601-3,000	775	55
	3,000 초과	1,545	-

○ 트랙터

종류별		중량(kg)	기본세액	당해단계 최저세율 100kg 초과시 가산액
1. 제1종(운송용)		1,300 이하	370	0
		1,301-3,000	425	55
		3,001-7,000	1,360	95
		7,000 초과	5,160	168
2. 제2종(농업용)		-	225	0
3. 1,2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를 가진 것		2,000 초과	1,000	0
4. 중기로 2에 속하지 않는 것	2차축	2,001-6,000	300	35
		6,001-14,000	1,700	70
		14,001	7,300	200
	3차축 이상	2,001-6,000	300	30
		6,001-14,000	1,500	50
		14,001-18,000	5,500	130

○ 화물차

종류별		중량(kg)	기본세액	당해단계 최저세율 100kg 초과시 가산액
휘발유 또는 LPG 사용차		1,600 이하	390	0
		1,601-3,000	430	40
		3,001 이하	984	0
기타 화물차	세미 트레일러용 (2차축)	1,600 이하	869	0
		1,601-3,000	929	60
		3,000-6,000	1,776	55
		6,001-10,000	3,426	66
		10,001-14,000	6,066	169
		14,001 이상	12,842	298

종류별		중량(kg)	기본세액	당해단계 최저세율 100kg 초과시 가산액
기타 화물차	세미 트레일러용 (3차축 이상)	1,600 이하	869	0
		1,601-3,000	907	38
		3,000-6,000	1446	69
		6,001-11,000	3525	79
		11,001-15,000	7485	101
		15,001-18,000	11533	119
		18,001-23,000	15097	217
		23,001 이상	25932	185
	기타 용도 (2차축)	1,600 이하	720	0
		1,601-3,000	775	55
		3,000-6,000	1,545	4
		6,001-10,000	1,677	29
		10,001-14,000	2,821	98
		14,001-17,000	6,737	175
		17,001 이상	11,984	229
	기타 용도 (3차축 이상)	1,600 이하	682	0
		1,601-3,000	731	49
		3,000-6,000	1,424	4
		6,001-11,000	1,556	14
		11,001-15,000	2,271	77
		15,001-18,000	5,351	136
		18,001 이상	9,443	172

○ 트레일러

종류별		중량(kg)	기본세액	당해단계 최저세율 100kg 초과시 가산액
총중량 3,000kg 이하		1,000 이하	150	0
		1,001-3,000	170	21
휘발유 또는 LPG 차에 의해 건인되는 총중량 3,000kg 이하	1차축	3,001 이상	580	11
	2차축	3,001-13,000	580	9
		13,001 이상	1,480	0
	3차축 이상	3,001-13,000	580	6
		13,001 이상	1,180	0
경유차에 의해 건 인되는 총중량 3,000kg 이하	조향축 세미 트레일러 (1차축)	3,001-5,000	630	78
		5,001-8,000	2,190	107
		8,001 이상	5,400	198
	조향축 세미 트레일러 (2차축 이상)	3,001-8,000	610	42
		8,001-11,000	2,710	76
		11,001-14,000	4,990	114
		14,001 이상	8,410	160
	기타 트레일러 (1차축)	3,001-8,000	320	36
		8,001-11,000	2,120	64
	기타 트레일러 (2차축)	3,001-8,000	310	23
		8,001-11,000	1,460	38
		11,001-14,000	2,600	58
		14,001-17,000	4,340	76
		17,001 이상	6,620	84
	기타 트레일러 (3차축 이상)	3,001-11,000	300	14
		11,001-14,000	1,420	30
		14,001-17,000	3,220	50
		17,001 이상	7,220	65
과세대상 트랙터에 의해 건인되는 총중량 3,000kg 초과	1차축	3,001-8,000	550	45
		8,001 이상	2,800	120
	2차축	3,001-8,000	550	20
		8,000-11,000	1,550	50
		11,001-17,000	3,050	170
		17,001 이상	13,250	250
	3차축 이상	3,001-11,000	550	20
		11,001-14,000	2,150	40
		14,001-20,000	3,350	75
		20,001-25,000	7,850	105
		25,001-30,000	13,100	120
		30,001 이상	19,100	45

14. 영국

1) 과세기준

영국의 자동차 보유세인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이다. 자가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며, 버스 등 승합차는 좌석수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는 차중(deadweight)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2) 세율

자동차소비세의 차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자가용 승용차, 밴, 택시

배기량	연세액(파운드)	반년 세액(파운드)
1,100cc 이하	100	55.00
1,100cc 초과	155	85.25

○ 오토바이, 3륜 싸이클

차종별		연세액(파운드)	반년 세액(파운드)
오토바이	150cc 이하	15	-
	151-250	40	-
	기타	60	33
전기 오토바이(2륜 및 3륜)		15	-
3륜 싸이클	150cc 이하	15	-
	기타	60	33

○ 승합차

좌석수	일반 버스		공해 저감장치 부착 버스	
	연세액(파운드)	반년세액(파운드)	연세액(파운드)	반년세액(파운드)
9-16	160	88	155	85.25
17-35	210	115	155	85.25
36-60	320	176	155	85.25
61 이상	480	264	155	85.25

○ 특수 자동차(Special Vehicles)

차중 3,500kg를 초과하는 이동식 크레인, 로드 롤러 등은 연세액 160파운드, 반년세액 88파운드로 과세된다.

○ 특수 트레일러

견인차가 위의 특수 자동차이고 수입차중 (revenue weight)이 12,000kg를 초과하고 트레일러의 총허용중량이 4,00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과세한다.

트레일러 세율표

트레일러 중량(kg)	연세액	반년 세액
4,000-12,000	155	85.25
12,000 초과	430	236.50

○ 소형 도서용 자동차(Small Island Vehicle)

소형도서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간세액 160 파운드, 반년세액 88 파운드가 과세된다.

- 자가용 중화물차(HGV : heavy goods vehicle)

자가용 HGV는 연간세액 160 파운드, 반년세액 88 파운드로 과세한다.

- Recovery Vehicles

중량(kg)	연세액	반년 세액
3,500-12,000	160	88
12,001-25,000	480	264
25,000 초과	800	444

- 특수형 자동차(Special Type Vehicles)

특수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연간 5,170 파운드, 반년세액 2,843.50 파운드를 과세한다. 공해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연세액 4,170 파운드, 반년세액 2,293.50 파운드를 부과한다.

- 특정 자동차

트랙터 등 농업용 자동차, 잔디 깎기나 제설용 자동차, 전기자동차, 증기 자동차 등은 연세액 40 파운드로 과세된다.

- 수입중량 12,000kg 이하의 화물차(Revenue Weight Rigid and Articulated Goods Vehicles)

총중량(kg)	일반		공해저감장치 부착	
	연세액	반년세액	연세액	반년세액
3,500-7,500	160	88	155	85.25
7,501-12,000	300	165	155	85.25

○ 수입중량 12,000kg 초과 화물차(Revenue Weight Rigid Goods Vehicles)

차종별	총중량(kg)	일반		공해저감장치 부착	
		연세액	반년세액	연세액	반년세액
2차축	12,000-13,000	470	258.50	155	85.25
	13,001-14,000	650	357.50	155	85.25
	14,001-15,000	840	462.00	155	85.25
	15,001-17,000	1320	726.00	320	176.00
	17,001-18,000	1600	880.00	600	330.00
	18,001-44,000	1600	880.00	600	330.00
3차축	12,000-17,000	490	269.50	155	85.25
	17,001-19,000	850	467.50	155	85.25
	19,001-21,000	1020	561.50	155	85.25
	21,001-23,000	1470	808.50	470	258.50
	23,001-25,000	2230	1226.50	1230	676.50
	25,001-27,000	2340	1287.00	1340	737.00
	27,001-44,000	2340	1287.00	1340	737.00
4차축 이상	12,000-21,000	350	192.50	155	85.25
	21,001-23,000	510	280.50	155	85.25
	23,001-25,000	830	456.50	155	85.25
	25,001-27,000	1470	808.50	470	258.50
	27,001-29,000	2320	1276.00	1320	726.00
	29,001-31,000	3360	1848.00	2360	1298.00
	31,001-32,000	4400	2420.00	3400	1870.00
	32,001-44,000	4400	2420.00	3400	1870.00

○ 수입중량 12,000kg 초과 연결 화물차(Revenue Weight Articulated Goods Vehicles)

차종별	총중량(kg)	일반		공해저감장치 부착	
		연세액	반년세액	연세액	반년세액
세미 트레일러와 연결된 2차축 견인 차	12,000-16,000	460	253.00	155	85.25
	16,001-20,000	520	286.00	155	85.25
	20,001-23,000	810	445.00	155	85.25
	23,001-28,000	1190	654.00	190	104.50
	28,001-31,000	1740	957.00	740	407.00
	31,001-33,000	2530	1391.00	1530	841.50
	33,001-35,000	5170	2843.00	4170	2293.50
	35,001-36,000	6750	3712.50	5750	3162.50
	36,001-40,000	9250	5087.50	8250	4537.50
	40,001-44,000	9250	5087.50	8250	4537.50
2차축 세미 트레 일러와 연결된 2차축 견인차	12,001-23,000	460	253.00	155	85.25
	23,001-26,000	590	324.50	155	85.25
	26,001-28,000	1130	621.50	155	85.25
	28,001-31,000	-	-	-	85.25
	31,001-33,000	-	-	-	-
	33,001-40,000	-	-	-	-
	40,001-44,000	9250	5087.50	8250	4357.50
3차축 이상의 세미 트레일러와 연결된 2차축 견인차	12,000-28,000	460	253.00	155	85.25
	28,001-31,000	1090	599.50	155	85.25
	31,001-34,000	1740	957.00	740	407.00
	34,001-36,000	2840	1562.00	1840	1012.00
	36,001-38,000	3210	1765.50	2210	1215.00
	38,001-40,000	5750	3162.50	4750	2612.50
	40,001-44,000	5750	3162.50	4750	2612.50

차종별	총중량(kg)	일반		공해저감장치 부착	
		연세액	반년세액	연세액	반년세액
세미 트레일러 연결된 3차축 견인차	12000-23000	460	253.00	155.00	85.25
	23001-26000	590	324.50	155.00	85.25
	26001-28000	1130	621.50	155.00	85.25
	28001-31000	1740	957.00	740.00	407.00
	31001-36000	2530	1391.50	1530.00	841.50
	3601-38000	2820	1551.50	1820.00	1001.00
	38001-41000	4250	2337.50	3250.00	1787.50
	41001-44000	7250	3987.50	6250.00	3457.50
2차축 세미 트레일러와 연결된 3차축 이상 견인차	12000-28000	460	253.00	155.00	85.25
	28001-31000	660	363.00	155.00	85.25
	31001-33000	1000	550.00	155.00	85.25
	33001-34000	1470	808.50	470.00	258.50
	34001-36000	2100	1155.00	1100	605.00
	36001-41000				
	41001-44000	7250	3987.50	6250.00	3437.50
3차축 이상 세미 트레일러와 연결된 3차축 이상 견인차	12000-33000	460	253.00	155.00	85.25
	33001-34000	570	313.50	155.00	85.25
	34001-36000	860	473.00	155.00	85.25
	36001-38000	1280	704.00	280.00	154.00
	38001-41000	2500	1375.00	1500.00	825.00
	41001-44000	1280	704.00	280.00	154.00